

제 2 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억(5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500)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이백만(2,000,000)주로 한다(단, 1주의 금액 5,000원 기준).

제8조 (주식의 종류)

- ①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본 회사는 기명식 보통주식 외에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을 종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8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2범위 내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배당률에 따라 우선배당한다.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 또는 1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3%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가 청산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통주식의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우선주식은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잔여재산 분배의 경우에도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우선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④ 우선주식은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배당을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경우, 미배당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연되지 아니한다.
- ⑤ 우선주식은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우선주식에 의결권이 부여된 경우 우선주식 일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우선주식에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경우에도 당해 우선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

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당해 우선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당해 우선주식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 또는 당해 우선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다만, 상환주식과 혼합된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⑦ 본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제8조의3(전환주식)

- ① 본 회사는 제8조의2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본 회사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주식분할 또는 병합 기타 법률이 허용하는 조정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④ 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간(이하 "전환기간 만료일")으로 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⑤ <삭제>
- ⑥ 전환주식의 기타 조건 및 내용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8조의4(상환주식)

- ① 본 회사는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3에 따라 우선주식 또는 전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로 그 우선주식 또는 전환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본 회사의 선택에 따라 본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주식의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은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무상증자 기타 상환주식수의 증감을 초래하는 사유 등 상환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상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써,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되도록 정할 수 있다.

가.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나.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④ 상환주식을 본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본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다만, 상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본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⑤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 대상주식을 본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본 회사는 상환청구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본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⑥ 제8조의3에 의한 전환주식을 본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⑦ 상환주식의 기타 조건 및 내용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9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 ① 본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외국인이 국내 지점 등을 통해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인투자기업 을 포함)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5.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이 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6.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본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본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 ① 본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서 정하는 한도까지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본 회사의 임직원 또는 관계회사의 임직원(본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본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 또는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④ 임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제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격
-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⑦ <삭제>
-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정년에 의한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의3 (동등배당)

본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부분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주주명부 작성, 비치)

- ① 본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 ② 본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본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삭제>
- ②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